###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중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관련 1651 제안년월일 : 2020년 11월 23일

제 안 자:기획경제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○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만을 한정적으로 의미하는 '상호'를 교류 협력 해외도시와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'친선'으로 수정함.

##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'상호결연'을 '친선결연'으로 수정함(안 제2장, 안 제5조 ~ 안 제7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 등).
- 나. '상호결연도시'를 '친선도시'로 수정함(안 제5조제2항, 안 제8조, 안 제13조제3호 등).
- 다. '상호우호도시'를 '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'로 수정함(안 제13조, 안 제22조제1항제3호 등).

###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중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장의 제목 중 "자매결연"을 "친선결연"으로 한다.

안 제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"상호결연"을 각각 "친선결연"으로 하고, 제2항 중 "상호결연도시"를 "친선도시"로 한다.

안 제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 본문까지 중 "상호결연"을 각각 "친선결연"으로 한다.

안 제7조의 제목 및 본문 중 "상호결연"을 각각 "친선결연"으로 한다.

안 제8조 중 "상호결연도시"를 "친선도시"로 하고,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중 "상호결연"을 각각 "친선결연"으로 한다.

안 제13조 중 "상호우호도시 등"을 "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상호결연도시"를 "친선도시"로 한다.

안 제22조제1항제3호 중 "상호우호도시"를 "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"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장 <u>자매결연</u> 체결	제2장 <u>자매결연</u> 체결	제2장 <u>친선결연</u> 체결
제5조( <u>자매결연</u> 등) ① 시	제5조( <u>상호결연</u> 등) ①	제5조( <u>친선결연</u> 등) ①
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		
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		
시와 <u>자매결연</u> 을 맺거나	<u>상호결연</u>	<u>친선결연</u>
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		
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.		
② <u>자매도시</u> 및 우호협	② <u>상호결연도시</u>	② <u>친선도시</u>
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		
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		
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		
선정한다.	<u>.</u>	<u>.</u>
제6조( <u>자매결연</u> 등의 제의)	제6조( <u>상호결연</u> 등의 제의)	제6조( <u>친선결연</u> 등의 제의)
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	①	①
터 <u>자매결연</u> 등의 제의	<u>상호결연</u>	<u>친선결연-</u>
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		
도시의 각종 기본 자료		
를 송부 받아 양도시의		
행정규모, 도시여건, 교		
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		
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		
② 외국도시에 <u>자매결연</u>	② <u>상호결연</u>	② <u>친선결연</u>
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		
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		

대한 각종 자료를 수		
집•분석하여 교류여건		
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		
정하여야 한다.	<b></b> .	<u></u>
③ <u>자매결연</u> 등 교류여	③ <u>상호결연</u>	③ <u>친선결연</u>
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		
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		
야 한다.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1. ~ 6. (개정안과 같음)
제7조( <u>자매결연</u> 의 의결) 시	제7조( <u>상호결연</u> 의 의결)	제7조( <u>친선결연</u> 의 의결)
장은 외국도시와 <u>자매결</u>	<u>상호결</u>	<u>친선결</u>
<u>연</u> 을 체결하고자 할 경	<u>연</u>	<u>연</u>
우에는「지방자치법」		
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		
의결을 거쳐야 한다.		
제8조(교류사업의 내실화)	제8조(교류사업의 내실화)	제8조(교류사업의 내실화)
시장은 <u>자매도시</u> 및 우	<u>상호결연도시</u>	<u>친선도시</u>
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		
시의 국제화 촉진 및 도		
시경제 · 문화 등 전반적		
인 분야에 실질적으로		
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		
하여야 한다.	,	
제9조(기록의 보존 및 관	제9조(기록의 보존 및 관	제9조(기록의 보존 및 관
리) 시장은 <u>자매결연</u> 등	리) <u>상호결연</u>	리) <u>친선결연</u>
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		
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		

를 계속 유지・관리하여		
야 한다.		
제10조(결연의 취소) 시장 은 양 도시간에 교류상	제10조(결연의 취소)	제10조(결연의 취소)
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		
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 절로 <u>자매결연</u> 이 유명무	<u>상호결연</u>	<u>친선결연</u>
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		
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		
거쳐야 한다.		
제13조(도시의 날 운영) 시	제13조(도시의 날 운영)	제13조(도시의 날 운영)
장은 <u>자매우호도시 등</u> 과 의 우호증진 및 서울거	<u>상호우호도시 등</u> -	<u>친선도시, 우호협력도</u> 시 등
주 외국인과의 소통강화		
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 로 "도시의 날"을 지정		
도 조시의 될 글 시성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		
를 실시할 수 있다.	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	1. ~ 2. (개정안과 같음)
3. 그 밖에 <u>자매도시</u> 등 과의 국제교류협력 증진	3 <u>상호결연도시</u> -	3 <u>친선도시</u>
을 위한 행사		
제22조(공무원의 해외도시	제22조(공무원의 해외도시	제22조(공무원의 해외도시
등 근무) ① (생 략)	등 근무) ① (현행과 같음)	등 근무) ① (개정안과 같음)

####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중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의 제목 중 "자매결연"을 "친선결연"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"자매결연"을 각각 "친선결연"으로 하고, 제2항 중 "자매도시"를 "친선도시"로 한다.

제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 본문까지 중 "자매결연"을 각각 "친선결연"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및 본문 중 "자매결연"을 각각 "친선결연"으로 한다.

제8조 중 "자매도시"를 "친선도시"로 하고, 제9조와 제10조 중 "자매결연"을 각각 "친선결연"으로 한다.

제13조 중 "자매우호도시 등"을 "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자매도시"를 "친선도시"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3호 중 "자매우호도시"를 "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"로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장 <u>자매결연</u> 체결	제2장 <u>친선결연</u> 체결
제5조( <u>자매결연</u> 등) ① 시장은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<u>자매결연</u> 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 협 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.	제5조( <u>친선결연</u> 등) ①
② <u>자매도시</u>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 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 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.	② <u>친선도시</u> 
제6조( <u>자매결연</u> 등의 제의) ① 시장은 외 국도시로부터 <u>자매결연</u>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도시의 행정규모, 도시여건,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.	제6조( <u>친선결연</u> 등의 제의) ①
② 외국도시에 <u>자매결연</u>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·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한다.	② <u>친선결연</u> 
③ 자매결연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 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   다.   1. ~ 6. (생 략)	③ <u>친선결연</u>
제7조( <u>자매결연</u> 의 의결) 시장은 외국도	제7조( <u>친선결연</u> 의 의결)

시와 <u>자매결연</u>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8조(교류사업의 내실화) 시장은 <u>자매</u> <u>도시</u>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도시경제·문화 등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록의 보존 및 관리) 시장은 <u>자매</u> <u>결연</u>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·관리 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결연의 취소) 시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<u>자매결연</u>이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다.

제13조(도시의 날 운영) 시장은 <u>자매우호</u> <u>도시 등</u>과의 우호증진 및 서울거주 외국인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"도시의 날"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
3. 그 밖에 <u>자매도시</u>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

<u>친선결연</u>
· 제10조(결연의 취소)
<u>친선결연</u>
제13조(도시의 날 운영) <u>친선도</u> 시, 우호협력도시 등

제22조(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) ① 제22조(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) ① (생략)

- 1. ~ 2. (생략)
- 3. 자매우호도시, 해외도시 등 외국 지 방자치단체 및 외국 중앙정부
- 4. (생략)

(현행과 같음)

- 1. ~ 2. (현행과 같음)
- 3. 친선도시, 우호협력도시-----
- 4. (현행과 같음)